



장례 지원

HRA 장례 서비스부(Office of Burial Services, OBS)는 작고한 저소득 뉴욕시 주민의 장례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이미 지불된 비용 또는 예정된 장례식 비용의 사전 승인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장 가능 항목

OBS는 고인의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지정 대리인에게 고인의 마지막 수습(장례, 화장, 화장된 유골 매장) 관련 장례 비용에 대해 최대 \$1,700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 비용이 \$3,400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장지, 무덤 개장, 화장 비용이 총 청구액에서 공제되며 남은 금액이 \$3,400 미만인 경우 장례 수당이 승인됩니다.

자격

장례 수당은 비용 충당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자산이 없는 저소득 뉴욕 주민의 장례식 비용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확인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OBS가 각 케이스의 개별적인 상황을 평가하게 됩니다.

증빙 서류

OBS에서는 이메일로 보낸 서류의 사진 또는 스캔 이미지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또는 사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출력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 수당 신청서의 처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 목록입니다. OBS는 각 케이스에 관련된 내용이나 환경을 바탕으로 자격 결정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또는 지정 대리인이 작성 및 서명한 장례 수당 신청 양식 M-860W.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확인하세요.
- 사망 증명서 원본필 사본(향후 신청자에게 반환됨).
- 선택된 상품 또는 서비스 내역(Statement of Goods and Services Selected) 이라고도 부르는 매장 계약서 사본. 계약서에는 장의사와 해당 계약을 한 사람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모든 비용 항목이 명시된 묘지 또는 화장 청구서 사본.
- 장의사가 서명하고 공증인 또는 증서 위임자 앞에서 공증받은 항목별 장례비 청구서 원본. 비용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신청자가 상환을 원하는 경우 ‘전액 지급’ 도장이 찍힌 장례비 청구서.
- 장례식장에 갚아야 할 비용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완전히 작성되어 장의사가 서명하고 공증인 또는 증서 위임자 앞에서 공증된 장의사의 진술 양식 원본.

지불금

장례비용이 개인에게 상환되는 경우, 지급을 받으려면 HRA에서 비용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옹호 단체, 장례식장 또는 장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W-9이 필요합니다. W-9 정보 요청은 OBS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례 절차를 책임지는 담당자 또는 고인을 대리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고인의 사망일자로부터 **백이십(120) 일** 안에 장례 서비스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례 수당 신청서(M-860W 양식)은 <http://nyc.gov/hra>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I Need Help(도움이 필요합니다)' 및 'Burial Assistance(장례 지원)'를 클릭하거나 장례 서비스부에 전화하여 신청서를 요청하십시오. 신청서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양식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신청서 제출 방법:

이메일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신청서를 BurialServices@hra.nyc.gov 에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NYC HRA Office of Burial Services 33-28 Northern Blvd. - 3r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업무 시간은 718-557-1399 번에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전화번호	팩스
신청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718-557-1399 번으로 전화하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해주십시오.	신청서를 917-639-0476 번에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